

사료안전성관리 관계규정고시 개정

농림부는 사료분야의 본격적인 광우병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사료공정서, 사료검사요령 등 사료의 안전성관리 관계규정 동시에 개정했다.
각 개정문을 요약·정리했다.

요약·정리 | 기획팀

농림부는 지난 9월 23일 사료로 인한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반추동물에는 동물성사료 금지하고 있으나, 국제기구(OIE) 및 EU·일본 등에서 광우병 예방을 위해 사용금지한 사료와 제한하는 사항을 우리나라로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광우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사료공정서·사료검사요령 3개 고시를 동시에 개정하여 광우병 예방시스템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사료공정서를 개정하여 원당(설탕원료)·육포 등을 단미·보조사료 범위에 신설하고, 다양한 형태의 애완견사료의 유통에 대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분등록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등 애완용의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과정

- 동물성사료 사용금지 계획 설명회 개최(03.1)
 - 배합사료제조업체, 육골분 등 동물성사료 제조업체 대표 등

○ 광우병 예방 관련 동물성사료 관리방안 기본계획 수립(03.2)

- 동물성사료 교차오염방지 방안, 동물성사료 혼입여부 검사법 도입 등

○ 제조업체 생산라인 및 동물성사료 사용전망 등 실태조사(03.3)

- 92공장 : 라인1개(64), 라인2개(18), 라인3개(9), 라인4개(1)
- 반추사료생산 73개소, 비생산 19개소

○ 광우병 예방대책을 보완·추진하기 위해 일본 현지 조사(03.4.14~19)

- 사료분야 조치사항, 동물성사료 혼입여부 검사방법 등 조사

○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등 3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03.6.12)

○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등 개정(안) 설명회 개최(03.6.24~25)

- 사료제조업체 관계자 등 106명

○ 고시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 및 개정(안) 보완(03.7~8월)

1.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3-41호)

-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동물 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의 종류”에 다음 사료를 신설(제5조)하여 “소 등 반추동물사료”로 사용 금지토록 근거 규정 마련
 - EU·일본 등에서 동물성단백질류로 분류하고 있는 “인산2칼슘”
 - 다만, 광물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 제외
 -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반영, 불용성 불순물함량이 0.15% 이상인 “동물성유지”(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 일본 등에서 소 사료에 사용을 금지시킨 어분·어즙흡착사료,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 다만, 사료공정서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제외(공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생산된 어분·계육분·혈분 등)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동물성사료로 분류하는 “겔라틴 및 콜라겐”
 - 사료공정서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포장 또는 운송한 사료
 -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여 반추·비반추용 사료를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사료
 - 미지정된 비반추용 벌크운반 차량에 의해 운반된 반추가축용 사료
 - 반추가축 및 동물성사료 운반용으로 지정된 톤백 및 지대포장이 아닌 일반 톤백 및 지대포장으로 운반된 반추가축용 사료
 - 사료공정서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

인받지 않은 동물성사료

-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동물성사료(계육분·어분·혈분 등)

사료내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범위와 허용기준에 서 “니트로빈” 제외

- 니트로빈은 인체발암을 우려하여 배합사료제조 용동물용의약품 등 사용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서 사용 금지(03.3)

2. 사료공정서 중 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3-42호)

광우병 예방을 위해 사료제조업체 등에서 제조·유통과정에서 동물성사료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준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제19조)

- 반추동물사료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하는 동일공정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지정된 전용차량을 사용, 벌크차량의 번호 등 기록·관리의 무화(동물성사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한함)

- 전용차량 봄대에 “반추동물사료전용운반” 표시 의무화

-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사료 또는 동물성사료 운반용으로 지정된 톤백 및 지대포장을 사용 의무화

- 톤백: 반추가축용 녹색·동물성사료용 노란색(글씨 적색통일)

- 반추가축용 지대포장: 상하단에 3cm 내외 붉은색 띠 표시

법 · 룰 · 개 · 정

- 불필요한 원료 사용 제한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을 방지하고, 분리된 공정에서 순수한 비반추동물성 단백질사료를 제조할 경우 소 등 반추동물사료로 사용 가능도록 하기 위해 다음사항 신설(제20조)
 - 계육분·우모분 및 가금부산물, 어분·어분흡착사료 및 어류가공품, 돼지·닭·오리에서 유래된 혈분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제조공정이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 의무화
 - 상기 사료와 기타 동물성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 의무화
 -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단백질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제조공정분리, 다른 단백질 및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혼입여부, 원료의 수집선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다만, 수입사료에 대하여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제조업체가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지대 또는 포장지에 “확인받은 동물성사료” 표시 의무화
 - 확인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또는 포장지에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 육골분 제조업체는 동물성단백질의 불활성화 정도를 높여 광우병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사항 신설(별표 4 제2장 제1절)
 - 육골분 사료의 원료를 가열처리 전에 최대 50mm 입자로 절단후 제조하도록 함
- 반추동물사료에 반추수유래단백질 혼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동물성단백질 검사방법을 신설(별표5)
- 혼미경검사법(비중, 염색), ELISA(효소면역측정검사법) 및 PCR(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법)
- 사료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 등이 확인된 다음사료를 단미사료범위에 신설하여 관리(별표1)
- 사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 다양한 애완견 사료의 유통에 대비한 “육포”, “혼합류”
- 지방 공급원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닭기름”
- 혼합가능한 단미사료의 종류에 “과실류가공부신물”
- 다양한 애완동물 사료의 유통에 대비 애완동물 범위를 “고양이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동물 또는 조류”로 확대(제13조 제2호)
-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사료첨가제로 허용되고 있는 “L-라이신 액상”, 애완견사료의 영양보충제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보조사료 혼합제”를 신설하여 관리강화(별표3)

3. 사료검사요령중 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3-43호)

-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광우병 발생전후 동물성사료의 사용처 추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서류검사 항목 신설(제16조제2호 단서규정)
 -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제품배합비율표는 8년간” 보관여부 확인(동물성사료 또는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한함)
 - 광우병 예방을 위해 반추동물용사료내 반추수유래단백질사료의 혼입여부 자가품질검사제도 신설(제21조 제2항 및 제3항)
 - 제조업체는 반추수유래단백질 함유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자가품질검사 품목 기준은
 - 배합사료의 경우 “고기소·젖소배합사료 및 축우용대용유별로 당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1개 품목
 - 단미사료의 경우 동물성사료중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동물성단미사료
 - 수입배합사료 검정성분 항목수를 국내산 검정성분 항목수와 일치(제24조 제7항)
 - 검정성분 항목수 : (현행)7개 이상 → (개정)5개 이상
 - 이중 안정성 관련성분 : (현행)4개 이상 → (개정)3개 이상
 - 수입사료로 인한 광우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검사요령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

- 정밀검정대상사료중 “여분·우모분·여분기타”를 “모든 동물성단미사료”로 범위를 확대하여 검정 실시(제25조 제2호)
- 수입사료중 농가에 직접공급되는 “반추가축용 배합사료”를 정밀검정대사사료에 신설(제25조 제5호)
-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수입사료중 “동물성단미사료” 및 “배합사료”에 대하여 반추수유래단백질 함유여부 검사후 이상이 없을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내용 신설(제25조 제3항)
- 안전성 및 품질검정 등이 필요한 수입 신고대상 사료의 품목(HS 10단위)을 확대(제24조 제2항 별표5)
 - 품목수(HS10단위) : (현행)187개 → (확대)223개(증 36)
 - 수입관리시 안전성 및 품질검정이 필요한 사료 : 33개
 -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식용으로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품목 : 3개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사료검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사료의 검정(소해면상뇌증관련 검사에 한함)임무 부여(별표 7중 검정내용 신설)

* 관련고시 전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feedia.org) 사료관련법령란 및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실국정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법 · 룰 · 개 · 정

□ 사료공정서 별표 변경사항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추가

1. 식물성	마. 식품가공 부산물류	제빵(제과 · 제면)부산물 · 조미료부산물 · 아미노산 발효부산물 · 제당부산 물 · 낙농가공부산물 · 두류가공부산물(대두박 제외), 당밀 · 과실류가공부산 물 · 음료가공부산물, <u>원당(신설)</u>	
2. 동물성	가. 단백질류	어분 · 어즙흡착사료 ·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 우모분 · 모발분 · 제각분 · 육 분 · 육골분 · 육즙흡착사료 ·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 · 피혁가공분 말 · 잠용박 · 번데기 · 새우분 · 계분 · 골뱅이분 · 육가공부산물 · 도축 및 가금 도축부산물 ·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 수지박(우지박 · 돈지박을 포함) · 동물 성발효사료 · 유도단백질(가수분해 · 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 · 계란분말 (난황 및 난백분말 등 가공품을 포함), <u>육포(신설)</u>	
	다. 유지류	우지 · 돈지 · 어유 · 양지 · 식용잔유(정제된 것) · 닭기름(신설)	
5. 혼합성 (신설)	혼합류 (신설)	<u>사용용도(예: 영양보충제 등) (신설)</u> ※ 혼합성 단미사료는 사료원료용으로 사용금지	

[별표 2] 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사항 추가

양식용 어류	어종별 사료종류 및 사용범위는 어종별 및 성 장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조업자가 정함 <예> 어린잉어용 어린뱀장어용	조단백질 · 조지방 · 칼슘	조섬유 · 조회분 · 인(신설)	
사육하는 동물 (신설)	제조업자가 정함	조단백질 · 조지방 · 칼슘 · 인	조섬유 · 조회분	※ 기타용도(간식용, 영양보충용 등) 및 보충영 양소 표시

[별표 3] 보조사료의 범위 추가

구 분	사료종류	총 명
2.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가. 아미노산제	아미노초산 · DL-알라닌 · L-라이신 액상(신설) · L-라이신염산염 · L-라이신염산염 액상 · L-라이신황산염 · L-글루타민산나트륨 · L-글루타민산 · DL-메치오닌 ·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 DL-트립토판 · L-트립토판 · L-트레오닌 · DL-트레오닌철 · L-알기닌과 그 합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혼합한 것(신설)	혼합제(신설)	사용용도(예 : 영양보충제 등) ※ 혼합제는 사료원료용으로 사용금지(신설)

[별표 6] 1. 단미사료의 성분등록 사항 변경 및 신설

구 分	사료종류	등록성분				기 타
		최소량(%)	최대량(%)			
식물성 부산물류	마. 식품가공 (신설)	원당	당도	수분 · 조회분 · 전화당 · 이산화당	납(mg/kg)	: 1.0 이하
유자류	다. 유자류	동물성 유지	조지방 · 열량 (kcal/kg)	산가(A · V) 30이하 · 수분 · (신설) 불용성 불 순물함량(0.02%이하 또는 0.15%이하)	불용성분순물 함량이 0.15% 이상은 사료 또 는 사료원료로 사용금지 (최종 판매용에 한함)	
혼합성 (신설)	동물별 구분	사용용도 (간식용, 영 양보충용 등)	각 단미사료에서 규정한 최소량 성분	각 단미사료에서 규정한 최대량 성분	혼합된 원료명 및 비율 각 단미사료에서 규정한 기타사항 표시	

[별표 6] 2. 보조사료의 성분등록 사항 변경 및 신설

구 分		등록성분			기 타
최소량(%)	최대량(%)				
비타민제	염화콜린	주요성분	TMA 500ppm이하	염화콜린중 주요성분함량은 50% 이하, 수분함량..... (이하동일)	
혼합제(신설)		각 보조사료에서 규정 한 최소량 성분	각 보조사료에서 규정 한 최대량 성분	혼합된 원료 및 비율, 각 보조사료에 서 규정한 표시사항	

*위 내용은 일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